

이슈페이퍼 2017-16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최 은 영 | 연구위원

1. 필요성
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안)
4. 논의 및 향후 과제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최은영 | 연구위원

## 요약

- 유아교육·보육 학계의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인 유·보 간 통합 논의를 고려할 때,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은 통합과정에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1인당 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 이에 본 고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연구들의 개념, 모형, 항목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에 대해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행정직,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산출모형(안)을 제시함.
- 또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을 4가지(안)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 향후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항목과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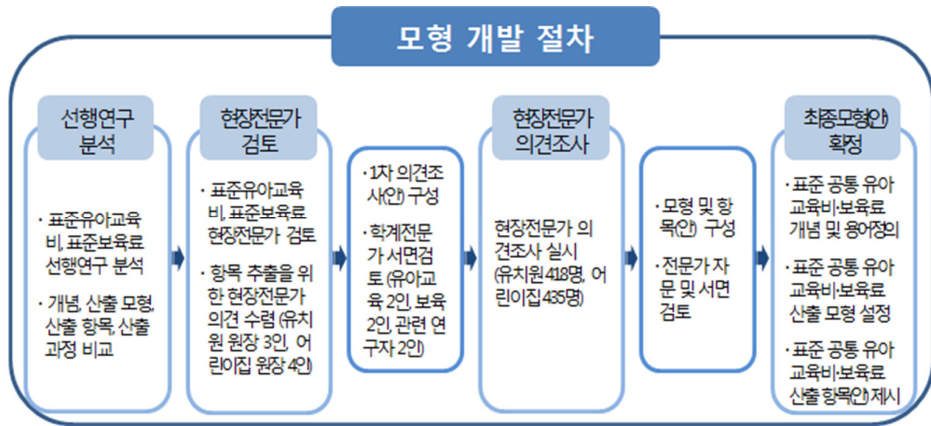
## 1 필요성

- 유아교육·보육 학계의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인 유·보 간 통합 논의<sup>1)</sup>를 고려할 때,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연구는 통합과정에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전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1인당 비용 산출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최은영·김나영·최윤경·엄문영, 2016)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1) 2014년 2월 발족한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2016년까지 단계적인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 중임(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2. 14).

- 이를 위해 질적 수준을 고려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체계와 기준 등이 상이하여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에도 항목과 기준이 다르나 국가가 연구를 통해 표준 비용을 산정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김현숙(2005)의 연구에서는 만 0~5세 연령에 따라 종일제(8시간)와 연장제(6시간)로 나누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으며, 구성항목은 김현숙(2009)의 연구와 동일하게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함.
  - 한편 한국여성부·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는 만 0~5세 연령에 따라 종일제(8시간), 연장제(5~6시간)로 구분하여 표준보육·교육 단가를 산출하였는데, 구성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김현숙(2005, 2009)의 연구들과 항목과 산출방법은 동일함.
-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산출 연구를 비교하면, 크게는 유아교육비·보육료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으며, 보육료는 시설유형 및 연령별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 산출 항목, 산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임.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연구들의 개념, 모형, 항목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에 대해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행정직,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산출모형(안)을 제시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안)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모형 개발 절차

## 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에 대한 의견

### 가.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시 필요 항목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해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
  -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표준인건비의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이었으며, 표준공통운영비의 학생복리비임.

〈표 1〉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수)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표준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1.8	98.2	100.0(853)
	교원 및 직원의 체수당	3.3	96.7	100.0(853)
	맞춤형복지비	13.2	86.8	100.0(853)
	법정 부담금	13.7	86.3	100.0(853)
표준교육활동 경비	교구비	2.8	97.2	100.0(853)
	재료비	4.1	95.9	100.0(853)
	설비비	7.5	92.5	100.0(853)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표준공통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8.1	91.9	100.0(853)
	공공요금	6.7	93.3	100.0(853)
	기본적 경비	6.6	93.4	100.0(853)
	학생복리비	11.6	88.4	100.0(853)

- 제 특성(기관유형, 지역규모, 유치원 설립유형)별로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의 필요 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모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2〉 제 특성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2.7	97.3	3.0	97.0	3.3	96.7	100.0(853)	
기관유형								
유치원	4.3	95.7	4.8	95.2	4.5	95.5	100.0(418)	
어린이집	1.1	98.9	1.4	98.6	2.1	97.9	100.0(435)	
$\chi^2(df)$	8.097(1)**		8.365(1)**		4.118(1)*			
지역규모								
대도시	2.6	97.4	3.4	96.6	3.4	96.6	100.0(468)	
중소도시	1.3	98.7	2.6	97.4	2.6	97.4	100.0(233)	
읍면	5.3	94.7	2.6	97.4	3.9	96.1	100.0(152)	
$\chi^2(df)$	5.611(2)		0.483(2)		0.606(2)			
설립유형								
유 치 원	공립단설	0.0	100.0	0.0	100.0	0.0	100.0 ( 15)	
	공립병설	6.9	93.1	2.7	97.3	3.2	96.8	100.0(188)
	사립법인	1.7	98.3	8.5	91.5	6.8	93.2	100.0( 59)
	사립사인	2.6	97.4	6.4	93.6	5.8	94.2	100.0(156)
$\chi^2(df)$	5.905(3)		na		na			

\*  $p < .05$ , \*\*  $p < .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표준보육료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교재교구비의 소모품, 관리운영비의 회의비, 여비, 차량비로 나타났으며, 시설비에서는 건축비 및 놀이터건축비로 응답됨.

- 이는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의 필요 항목: 표준보육료

단위 : %(수)

구성 요소		불필요	필요	계(수)
인건비	급여	2.0	98.0	100.0(853)
	퇴직금, 퇴직적립금	3.8	96.2	100.0(853)
	사회보험 부담금	4.8	95.2	100.0(853)
	시간외 수당 정액	7.7	92.3	100.0(853)
교재교구비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3.5	96.5	100.0(853)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5.0	95.0	100.0(853)
	비품	7.6	92.4	100.0(853)
	소모품	10.1	89.9	100.0(853)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	7.2	92.8	100.0(853)
	직책급	10.2	89.8	100.0(853)
	회의비	19.5	80.5	100.0(853)
	여비	16.1	83.9	100.0(853)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7.7	92.3	100.0(853)
	연료비	10.0	90.0	100.0(853)
	차량비	16.3	83.7	100.0(853)
식단가	급간식 재료비	3.9	96.1	100.0(853)
	조리기기 및 소모품	9.3	90.7	100.0(853)
시설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13.4	86.6	100.0(853)
	시설유지관리비	7.0	93.0	100.0(853)

- 제 특성(기관유형, 지역규모,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식단가, 시설비의 필요 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보육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 제 특성별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의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식단가		시설비		계(수)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전체	2.3	97.7	4.0	96.0	4.2	95.8	4.5	95.5	7.3	92.7	100.0(853)
기관유형											
유치원	3.6	96.4	5.5	94.5	7.7	92.3	6.7	93.3	9.6	90.4	100.0(418)
어린이집	1.1	98.9	2.5	97.5	0.9	99.1	2.3	97.7	5.1	94.9	100.0(435)
$\chi^2(df)$	5.539(1)*		4.925(1)*		23.927(1)***		9.694(1)**		6.438(1)*		
지역규모											
대도시	2.8	97.2	4.5	95.5	5.1	94.9	5.6	94.4	8.3	91.7	100.0(468)
중소도시	0.9	99.1	3.0	97.0	3.9	96.1	3.4	96.6	4.7	95.3	100.0(233)
읍면	3.3	96.7	3.9	96.1	2.0	98.0	2.6	97.4	7.9	92.1	100.0(152)
$\chi^2(df)$	3.224(2)		0.895(2)		2.926(2)		3.090(2)		3.119(2)		
설립유형											
국공립	1.3	98.7	4.0	96.0	1.3	98.7	1.3	98.7	4.0	96.0	100.0( 75)
사회복지법인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00.0( 18)
법인/단체	2.8	97.2	5.6	94.4	5.6	94.4	5.6	94.4	5.6	94.4	100.0( 36)
민간	1.9	98.1	3.2	96.8	0.6	99.4	1.9	98.1	6.3	93.7	100.0(158)
직장	0.0	100.0	2.3	97.7	0.0	100.0	4.7	95.3	7.0	93.0	100.0( 43)
가정	0.0	100.0	0.0	100.0	0.0	100.0	1.9	98.1	3.8	96.2	100.0(105)
$\chi^2(df)$	na		na		na		na		na		

\*  $p < .05$ , \*\*  $p < .01$ , \*\*\*  $p < .001$ , na는 사례수 특성상  $\chi^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나. 수정 및 추가해야 할 항목

-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항목 및 구성요소 중 항목 간 이동이 필요하거나 용어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문가 모두 표준보육료의 비품 및 소모품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표준인건비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5〉 세부 구성요소 중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소

구분	내용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보육료의 시설유지관리비 → 관리운영비</li> <li>표준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방과후 전담사) 및 제수당은 표준인건비</li> <li>표준교육활동경비: 설비비 → 관리운영비로 이동 표준공동운영비: 비정규직 인건비 → 비정규 및 일용직 인건비 항목 및 정규직 교원 및 직원의 기타 항목으로 이동</li> <li>표준보육료의 비품, 소모품 → 관리운영비</li> </ul>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기기 및 소모품 → 관리운영비</li> <li>표준유아교육비의 비정규직 인건비 → 표준인건비</li> <li>표준보육료의 비품, 소모품 → 관리운영비</li> </ul>

###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안)

#### 가.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보육료는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한 개념을 갖음.
- 본 고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함.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함.

#### 나.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

##### 1)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구성

-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인건비, 교육활동 경비, 공동운영 경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료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등이 포함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교원과 시설 설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므로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교재교구비와 공동운영비로 구분하여 산출함.

## 2)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

-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은 현재 어린이집 법적 기준인 3세 15명, 4, 5세 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 이는 2015년 기준, 공·사립유치원의 평균 학급당 원아 수는 공립 16.5명, 사립 19.4명으로 평균 17.9명(교육통계연보, 2015) 약 18명과 유사한 수치이며,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위한 학급편성 기준으로 가용하고자 함.

〈표 6〉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

단위: 학급

구분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3세반	1	1	1	2	2	2	3	3
4세반	1	1	2	2	2	3	3	3
5세반	1	2	2	2	3	3	3	4

- 3학급의 경우,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3세반, 4세반, 5세반이 1개 학급씩 구성된 것으로 함.
  - 연령별로 학급당 이용아 수는 3세 15명, 4, 5세는 각각 20명으로 설정함.

〈표 7〉 규모별 이용아 수

단위: 명

구분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계	55	75	95	110	130	150	165	185
3세반	15	15	15	30	30	30	45	45
4세반	20	20	40	40	40	60	60	60
5세반	20	40	40	40	60	60	60	80

### 다.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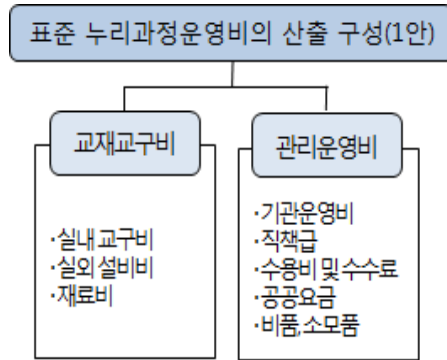
- 산출항목 구성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기존의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항목 각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인건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다소 나타남.

- 이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 항목만으로 구성함. 교재교구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구와 설비, 재료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며,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함.

〈표 8〉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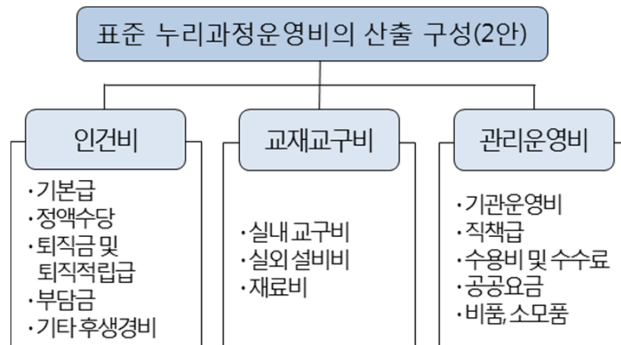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료		표준누리과정 운영비		비고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구성 항목	구성 요소	
표준 인건비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급여	인건비	기본급	1안에서 제외
	교원 및 직원의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 부담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시간외 수당 정액		정액 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표준 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교재 교구비	실내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재·교구비	교재 교구비	실내 교구비	비품 및 소모품은 운영비에 포함
	재료비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실외 설비비	
	설비비		비품 소모품		재료비	
표준 공통 운영 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운영비	기관운영비	관리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여비, 차량비 제외/ 교재교구비의 비품, 소모품 포함
	공공요금		직책급		직책급	
	기본적 경비		회의비		회의비	
	학생복리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비품, 소모품	
식단가	급간식 재료비	식단가	급간식 재료비	식단가	급간식 재료비	1안에서 제외
	조리 기기 및 소모품		조리 기기 및 소모품			
시설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시설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시설비	건축비 및 놀이터 건축비	제외
	시설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 체계와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기에 인건비는 항목에서 제외한 안을 1안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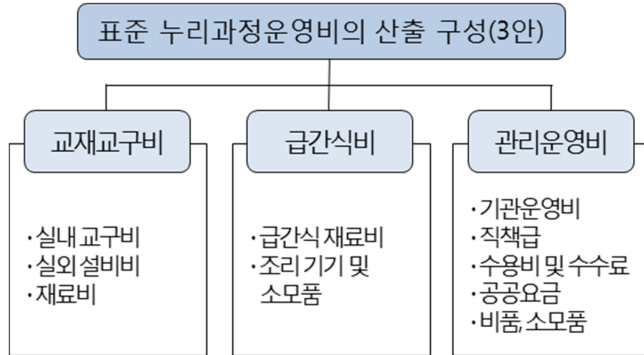
[그림 2]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1안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정의한 바 있음.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다면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안으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교원 수준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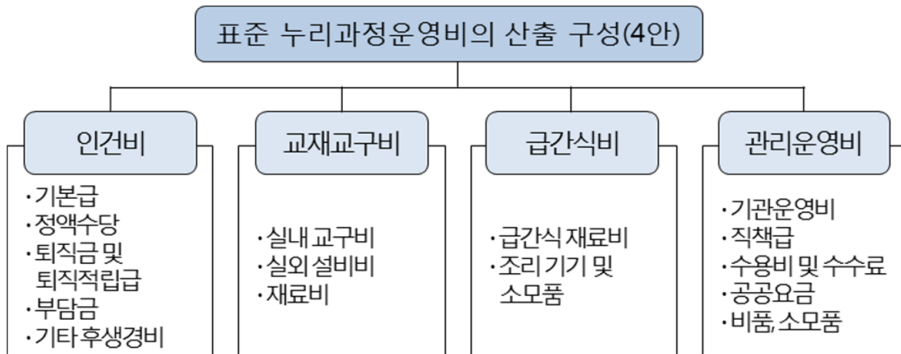
[그림 3]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2안

- 2015년 2월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1일 4~5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함(교육부, 2015. 2. 24).
  - 이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급간식비를 포함한 항목을 3안으로 제시함.



[그림 4]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3안

- 4안은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고려하고,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를 모두 포함함.



[그림 5]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 최종(안) -4안

## 4 논의 및 향후 과제

- 2013년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일원화되고, 양 기관이 동일하게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3~5세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등에서 유아 1명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에 이루어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개념임.

  - 본 고에서는 누리과정(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과 산출 항목을 설정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산출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은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에 따른 학급 수, 이용아 수를 제시함.

  - 표준 유치원·어린이집 모형의 표준학급 수는 현실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하는 수치로 학급 편성을 고연령 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표준이용아 수는 만 3세 15명, 만 4, 5세 각각 20명으로 설정함.
  - 표준 누리과정운영비의 개념이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모형으로 판단되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향후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비용 산출을 위한 산출항목 및 구성요소에 따라서 산출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객관성 담보도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

  - 보육료 개념에는 12시간 전일 보육이 포함되어 급식비, 차량비 등이 모두 ‘보육료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급식비와 차량비 등이 대부분 ‘수익자부담 경비’임.
  -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는 반면(보건복지부, 2012), 유아교육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 201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2월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1일 4~5시간으로 편성하도록 함(교육부, 2015. 2. 24).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에 급식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항목(1안)을 크게 교재교구비와 공통운영비로 구분하였으며, 표준보육료의 구성 요소인 급간식비, 차량운행비는 제외하고, 기타 안을 포함함.
  -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 유보통합 등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표준 누리과정운영비 산출항목과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2. 24).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고시문.
- 국무조정실보도자료(2014. 2. 14).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발족.
- 김현숙(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46-57.
- 김현숙(2009). 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21-40.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최은영·김나영·최윤경·엄문영(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여성부·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